

**2023년 천안의료원지부 산별현장보충교섭**

# **합 의 서**

**2023. 10. 30.**

**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
대전충남지역본부 천안의료원지부**

# 2023년 천안의료원지부 산별 현장 보충교섭 합의서

천안의료원 노·사는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잠정합의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.

## ■ 2023년 임금인상 적용시기

1.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합의에 따른 임금인상 적용시기는 23년에는 7월로 한다.

## ■ 단체협약

1. 장기재직휴가
  - 1)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지원으로 최초 입사일 기준 만 10년, 만 15년, 만 25년, 만 30년 이상이 되는 해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일자가 도래하는 년도 1월에 다음과 같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. 단, 발생한 장기재직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한다.

구분	만10년	만15년	만20년	만25년	만30년 이상
특별휴가 일수	2일	3일	3일	3일	5일

2)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이 2024년부터 2027년도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입사일 기준 만 10년, 만 15년, 만 20년, 만 25년으로 구분하여 해당 근속년수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근속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며 아래 <별표1>에 따른다.

2. 부서운영업무비

1) 부서운영업무비는 출자·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24년까지 노·사가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2025년에 실시하도록 노력한다.

[사측 대표]

천안의료원 원장 이 경 석



[노측 대표]

천안의료원 지부장 서 해 용





<별표 1>

### 2027년까지 정년퇴직자의 장기재직휴가 기준표

입사년도	정년퇴직	공로연수	장기재직휴가일수		
2013년	2024년 6월30일 ~2027년 12월 31일	-장기재직휴가 부여일 기준 공로연수중인 직원 제외	2일		
2012년	2024년 6월30일 ~2026년 12월 31일				
2011년	2024년 6월30일 ~2025년 12월 31일				
2010년	2024년 6월30일 ~2024년 12월 31일				
2008년	2024년 6월30일 ~2027년 12월 31일			3일	
2007년	2024년 6월30일 ~2026년 12월 31일				
2006년	2024년 6월30일 ~2025년 12월 31일				
2005년	2024년 6월30일 ~2024년 12월 31일				
2003년	2024년 6월30일 ~2027년 12월 31일				3일
2002년	2024년 6월30일 ~2026년 12월 31일				
2001년	2024년 6월30일 ~2025년 12월 31일				
2000년	2024년 6월30일 ~2024년 12월 31일				
1998	2024년 6월30일 ~2027년 12월 31일		3일		
1997년	2024년 6월30일 ~2026년 12월 31일				
1996년	2024년 6월30일 ~2025년 12월 31일				
1995년	2024년 6월30일 ~2024년 12월 31일				